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통일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6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구체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집합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42조의4)

나.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매각 및 사용 등의 내용 및 조건은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하고, 탈북청소년 학교 등의 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 매입 허용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47조의5)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업무 위탁으로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운영을 추가함(안 제49조제4항 3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① 법 제22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국내입국지원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업무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 보호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업무
5.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업무
6.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 업무

② 법 제22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

4. 기타 종사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의5 및 제47조의6을 각각 제47조의6 및 제47조의7로 하고,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을 대부·매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제49조제4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2조의4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2조의4(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① 법 제22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u> <u>1.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국내 입국지원 업무</u> <u>2. 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 시설에서의 보호 업무</u> <u>3. 법 제11조의2에 따른 무연고 청소년 보호 업무</u> <u>4.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 적응 교육 업무</u> <u>5.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업무</u> <u>6.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 업무</u> <u>② 법 제22조의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매년 1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u>

<신 설>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정책과 제도

4. 기타 종사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
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착지원 업무 종사
자에 대한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
한다.

제47조의5(공유재산의 대부·매
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수익
의 내용 및 조건 등은 공유재산
을 대부·매각하거나 사용·수
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
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
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u>제47조의5</u> · <u>제47조의6</u> (생략)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u>제47조의6</u> · <u>제47조의7</u> (현행 제47조의5 및 제47조의6과 같음)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

각 목의 사업 가. (생 략) <u>나. 지역적응센터의 직원에</u> <u>대한 보수교육</u> 다. 삭 제 라. (생 략) 2.·3. (생 략) <u><신 설></u> 4. ~ 11. (생 략) ⑤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u><삭 제></u> 라.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u>3의2. 법 제22조의4에 따른 보</u> <u>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u> <u>에 대한 교육 운영</u> 4. ~ 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정착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5923